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 14 호                   |
| 의 결<br>년 월 일 | 2006년 9월 7일<br>(제 123 회) |

## 2005 豫備費支出承認(案)

|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음 성 군 수      |
| 제출년월일 | 2006년 6월 30일 |

## 2005 예비비지출승인(안)

|          |    |
|----------|----|
| 의안<br>번호 | 14 |
|----------|----|

제출년월일 : 2006. 6.30.

제출자 : 음성군수

### 1. 제안사유

2005년도 예비비중 음성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(예비비사용)에 의한 지출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(예비비)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음.

### 2. 주요골자

(단위 : 천원)

| 번호 | 예비비 지출 사업명                  | 승인일자  | 승인금액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
| 총  | 계 (4건) 【 일반회계 4건, 특별회계 -건 】 |       | 484,714 |
| 1  |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유관행사 지원     | 04.28 | 7,750   |
| 2  |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               | 08.25 | 2,795   |
| 3  | 폭우피해 복구비                    | 10.28 | 457,487 |
| 4  | 폭우피해 산사태 복구비                | 12.01 | 16,682  |

첨 부 : 2005년도 예비비 사업별 지출현황.

# 2005년도 예비비 사업별 지출현황

## □ 총 관

(단위 : 천원)

| 회 계 별   | 예 산 액(1)   | 지 출 액(2) | 잔 액(1-2)   |
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총 계     | 16,540,059 | 484,714  | 16,055,345 |
| 일 반 회 계 | 8,194,935  | 484,714  | 7,710,221  |
| 특 별 회 계 | 8,345,124  | -        | 8,345,124  |
| 공 기 업   | 1,676,206  | -        | 1,676,206  |
| 기 타     | 6,668,918  | -        | 6,668,918  |

### 1.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유관행사 지원

(문화공보과 4. 28) / 7,750천원

-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【2005.05.28~05.31(4일)】 및 제2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【2005.05.28~05.31(4일)】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홍보비 및 자원봉사 참가자 급식보상으로 7,750천원이 소요되는바
- 당초 체전행사의 모든 경비는 충청북도의 계획 하에 추진 결정하였으나 예측하지 못한 홍보비 및 참가자의 수요가 발생하여 예비비에서 지원하였음.

### 2. 호우피해 농작물 복구비 (농림과 8. 22) / 2,795천원

- 2005.6.30 ~ 7.2. 기간 중 집중호우로 발생한 농작물에 대하여 재해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국고분의 자금배정과 도비분이 도 예비비로 보조 결정됨에 따라 재해복구비 (대파대, 농약대)로 지방비 5,589천원이 소요되는바
- 이중 충청북도 예비비 2,794천원은 예산성립전 집행할 수 있게 조치하였으며, 군비부담분 2,795천원의 재해복구 소요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지원하였음.

### 3. 폭우피해 복구비 (재난안전과 10.24) / 457,487천원

[지역개발, 하천관리, 도로보수, 친환경농산, 농업기반조성]

- 2005. 9. 17 ~ 18일 내린 폭우피해로 발생한 도로, 소하천, 농경지 주택 등 수해피해에 대하여 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복구를 위한 소요사업비 1,537,000천원이 소요되는바
- 이중 국도비 보조금 1,079,513천원은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조치 하였고 군비부담금 457,487천원의 재해복구 소요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지원하였음.

### 4. 폭우피해 산사태 복구비 (산림축산추진단 11.30) / 16,682천원

- 2005.9.17 ~ 18일 내린 폭우피해로 발생한 산사태에 대하여 산림분야의 재해복구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복구비 66,727천원이 소요되는바
- 이중 국·도비 보조금 50,045천원은 예산성립전으로 집행할 수 있게 조치하였으며, 군비부담금 16,682천원의 재해복구 소요 부족분을 예비비로 지원하였음.

## 참 고 자 료

### < 관련규정 >

#### 가. 음성군 재무회계규칙 제29조 (예비비 사용)

- ① 본청 실·과장,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(별지 제20호 서식)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·과장, 군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장,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나. 지방자치법 제120조 (예비비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-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